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2 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19. 11. 7.(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과장	담당자	박수환 사무관 02)2110-4079

법무부는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여, 보호소 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6(수) 한국일보, 「의사 1명이 20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 보도 관련

치료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하체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건강이상 증세를 호소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 상기인은 화성보호소 보호 중 약 4일마다 한번씩 의사의 내부
진료를 받았으며, '19. 8월 검진 결과 우측 눈 시야 손실과 하지
부종 등이 관찰되어 외부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백내장
진단을 받아 9월과 10월 2차례 대학병원에 외부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갑자기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국내 보호소 3곳 모두 말만 보호소일 뿐 과거 교도소를 개조해
만든 곳이다 보니” 관련,

- 국내 보호시설 3곳(화성, 청주, 여수) 모두가 과거 교도소를
개조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00. 11. 20.,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2004. 12. 1. 각각 신축한 일반 건물입니다.

- 청주외국인보호소만 기존 청주여자교도소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04. 7. 1. 개소 후, 2018. 7. 13.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년에 한번 소독작업을 하는 것이 보호소 내 위생관리의 전부다 보니” 관련

- 화성보호소에서는 외부 소독업체(세스코)를 통해 월 1회 보호동 전체(보호실 포함)를 소독하고, 위생원(위생사 자격 소지)이 주 1회 보호실 내 화장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입소 시 모든 보호외국인에 대해 발열감시기 등을 통해 감염병 유무를 확인하고, 매주 토요일을 청소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소(실) 내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들은 ‘미등록 체류자’란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관련

- 체류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자진출국의사, 법 위반의 정도, 국내 체류의 필요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명령 없이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통해 스스로 출국하게 하거나, 통고처분 후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집행을 위해 외국인의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경우 출국비용이나 외부진료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보호소 내 의료인력·시설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료인력 확충 노력과 함께 주기적인 건강검진·외부진료 실시 및 심리상담 상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여 보호소 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